



(1 / 1)

납세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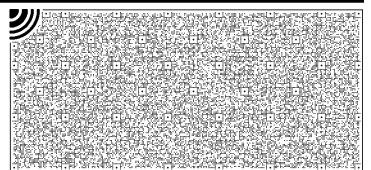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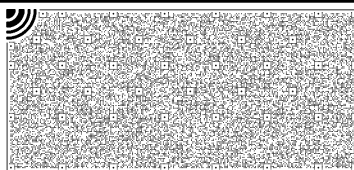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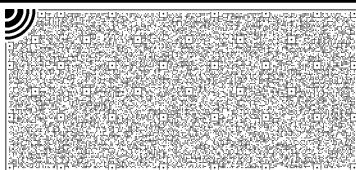
발급번호	4347-145-5021-037	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	
납세자 인적사항	성명(상호)	포보코리아 주식회사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19-86-50720		
	주소(사업장)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, B-107호(관양동, 에이스평촌타워)					
증명서의 사용목적	☐ 대금수령 ☐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 ☒ 기 타						
	유효기간	2025 년 10 월 1 일					
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☒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6조 제1항 ☐ 기 타 (사유:)					
연장·유예 내역	연장·유예 종류	연장·유예 기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	해	당	없	음		
	(단위 : 원)						
물적납세의무 채납내역	위탁자·양도담보설정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	
	해	당	없	음			
	(단위 : 원)						

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·유예액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,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의2·제12조의2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 ※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채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.

접수번호	504775833422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
연락처	031-389-8224

2025 년 9 월 1 일

동 안 양 세 무 서 장



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 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* 본 증명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